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- 87호

「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2단계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,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(등지 내몰림) 사전예방 필요.
-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제도정비

2. 주요내용

- 「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」 신설
 -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
 -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, 임대차기간, 계약 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
 -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
 -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방침 제시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0. 12. ~ 2017. 10. 16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1부. 끝.

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(이하 “상생협약”이라 한다)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
2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
3.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·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, 임대차기간,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단,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6조(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(이하 “상생협약”이라 한다)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.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·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, 임대차기간,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단,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</p> |

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
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
제외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
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
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
할 수 있다.

제6조 ~ 제19조 (생략)

제7조 ~ 제20조 (현행 제6조부터 제
19조까지와 같음)